

강원특별자치도

경고·주의·권고

제 목 전문능력성적 평정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소방서 ○○○○○○○○○(前 ○○○○○○ ○○○○○○) 소방○(前 소방○) ○○○○
② ○○○○○○ ○○○○○○(前 ○○○○○○ ○○○○○○) 소방○ ○○○○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 전보, 특별승급, 성과 상여금지급, 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를 위하여 연 2회 근무성적 평정·경력평정·교육훈련성적평정 및 승진대상자명부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에 따르면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고, 제10조에 따르면 소방위 이하의 계급(2023. 3. 28. 일부개정)으로 2026. 1. 1. 이후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소방장 이하의 계급)에서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점은 전문교육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및 전문능력성적 3점으로 하고, 제11조에 따르면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령 이하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점 70퍼센트, 경력평정점 1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 (2024. 9. 30. 일부개정 전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2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소방사 전문능력평정 대상 자격증과 평정점 및 평정방법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 1.5점, 응급구조사 2급 (또는 1급) 또는 간호사 1.5점으로 하고 자격증은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자격증 보유 여부로 평정하고,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2026. 1. 1. 일부개정으로 2026. 1. 1. 이후 소방위 삭제)의 전문능력 평정은 "소방위 이하 전문능력 평정규정"과 같이 평정하고, 소방사 중 제1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 (면허)소지자가 당해 자격(면허)증을 채용요건으로 하여 경력경쟁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을 보유한 경우 1.5점으로,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에 소방교·소방장 계급의 자격증 중 1개를 소방사 계급에서 취득한 경우 3점으로 평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0000. 0. 0. 신규임용된 소방☆ ♡♡♡은 0000년 ♣♣♣♣♣ 분야 경력 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되었는데 ♦♦♦♦♦ 분야 경력채용시험의 경우 0000년까지는 ●●● △△△△△가 채용요건에 포함되었으나, 0000년은 ◇◇◇ ㉠㉠㉠ ㉠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 자격과 당해 분야 0년 이상 실무경력만으로도 응시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격에 대하여 전문능력을 평정할 때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잘못 평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 대상 기간 중 실시한 전문능력성적평정 결과를 확인한 결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소방☆ ♡♡♡에 대한 전문능력평정점이 0회 잘못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소방♣ ◆◆◆의 경우 0000년 상반기 승진대상자명부 총점이 00.00점이었는데, 여기에 ●●● △△△△△△ 보유에 따른 전문능력성적평정점 0.00점을 더하면 00.00점이 되고,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확인한 0000년 상반기 소방◇ 승진심사대상자 통합명부 컷트라인이 00.00점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소방서에서는 평정 당시 담당자(소방㉠ ●●●)가 본인(소방◎ ☆☆☆)에게 ♡♡♡♡♡♡ 및 채용요건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0000년 채용요건 변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전문능력성적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평정 후 평정 결과에 대한 열람 절차를 통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졌으나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어 해당 내용이 지속 반영되었으며, 향후 전문능력성적 평정 시에는 채용요건, 자격·면허 인정 여부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평정결과 열람 과정에서도 대상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는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소방서 △△△△△에서 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소방㉠ ●●●은 0000. 0. 00.부터 0000. 0. 0.까지 ◎◎소

방서 ☆☆☆☆☆에서 ♡♡♡♡♡♡으로 평정업무를 검토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전문능력평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평정점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0000년 상반기부터 0000년 상반기까지 총 0회(소방♣ ◇◇◇은 0000년 상반기와 0000년 하반기 총 0회)에 걸쳐 소방◎ △△△에 대한 전문능력성적 평정점을 잘못 산정·반영하였고, 그 결과 소방◇ ㉠㉠㉠이 0000년 상반기 승진심사대상자 명단에서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평정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채용 요건 관련 사항을 확인했던 점, 평정 결과에 대한 열람 절차를 거쳤으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0000년 상반기 소방교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분석해 볼 때 승진대상자로 선발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경력경쟁채용 임용조건이 해당 연도부터 바뀔에 따라 규정 반영에 실수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요소이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및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그 대신 소방● ○○○○은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의」 처분 사유에 해당하고,

소방☆ ♡♡♡는 「같은 규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고」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6. 조치할 사항

가. ○○○○○○은

- ① [권고] 근무성적·경력·교육훈련성적·가점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평정표를 확인(날인)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작성한 평정표의 점수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여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자체 검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조치결과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은

- ①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다. ○○○○○○○○○○○(○○○○○○○○)은

- ① [경고] 위 관련자 소방● △△△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부사항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근무성적평정, 전보인사, 교육훈련,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포상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평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통보·권고

제 목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등 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에서는 「소방기본법」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등 총 00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3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지리조사에 대한 정밀조사 연 2회(해빙기, 동절기)와 정기조사 월 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고, 소방용수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조사 시 소방용수의 위치 파악 및 소방용수 표지판의 설치 여부·구조 및 용량·수압·수심·수량의 감수 여부·지반과 수면과의 거리·토사매물 또는 시설의 고장 여부·소방차량의 진입 가부 등에 대해 유의하여 실시하고 소방용수조사부에 조사 내용을 기록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24년 7월 1일자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소화전 호스접결구 높이 기준이 명시¹⁾됨에 따라, 기존 설치 소화전에 대하여 해당 기준을 직접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정기조사 과정에서 현장 사용상 장애가 예상되는 시설은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유지·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정밀조사 및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용수시설의 토사매물 또는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거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했고, 이에 따른 고장 발생 내역 및 특이사항에 대하여 조사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 유지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소방용수조사부 작성 업무 소홀

○○소방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고장발생보고 대상 소화전을 확인한 결과 ☆☆000호는 0000. 0.부터 00.까지 담당자 변동(소방♡♣♣♣)으로 인해 기존 장소(◆◆◆◆◆ ◆◆ ◆)에 위치한 ●●000호 소화전을 점검하지 않고 길 건너편 다른 소화전(미인수 소화전)을 점검하였고, 이후 0000. 00. 대체근무로 임시로 배치된 담당자(소방△◆◆◆)도 잘못 파악된 소화

1)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

전을 그대로 점검하여 0000. 00. 00. 고장발생보고를 실시 후 본서 소방용수 담당자로부터 미인수 소화전임을 안내받은 후 기존 장소에 위치한 ㉠㉠000호를 추가로 점검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또한 ㉠㉠000호는 0000. 0. 정기점검에 따라 소화전 바닥 균열을 확인하고 고장발생보고를 실시하였으나 이후 점검 시 소방용수관리시스템상 그 밖의 사항에 정상출수, 주변정리 등으로 기재하는 등 고장발생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나. 소방용수시설 위치 부적정 관리

○○소방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소방용수시설 위치의 적정성에 대하여 샘플링 방식으로 검토한 결과 ◎◎000호 후면은 아파트 외벽, 전면은 주차장 실선 구역과 맞닿아 있어 소방차 접근 및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담당자들은 시스템상 양호 및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였고, ☆☆000호는 소화전이 ♥♥♥♥♥♥ 철제 담장 안쪽 화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소방차 접근 및 호스 전개 시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담당자들은 시스템상 양호 및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였다.

다만, ♡♡000호는 ○○소방서에서 시달한 「2026년도 소방용수시설 등 관리운영계획(○○)」을 통해 울타리 너머에 설치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소화전 이설에 관하여 검토 중인 것이 확인되었다.

다.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부적정

○○소방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소방용수시설 000개에 대하여 소방용수조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호스접결구 높이가 지면에 가까이 있거나, 소화전 보호틀 방향이 부적정한 내역이 00건 확인되었다.

다만, ◇◇000호와 ●●000호는 ○○소방서에서 시달한 「2026년도 소방용수

시설 등 관리 운영계획(○○)」을 통해 부적정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고 소화전 이설에 관하여 검토 중인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소화전 호스접결구 높이가 낮아 현장 사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존 설치된 소화전의 경우 설치 당시 적법하게 설치되었더라도, 향후 도로포장, 인근 재개발 등 주변 여건 변화로 호스접결구가 지면에 가까워질 수 있으므로 담당자는 정기조사 시 이를 확인하여 관계기관 통보 등 유지·관리 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이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이 2024년 7월 1일자 개정을 통해 소화전 호스접결구에 대한 높이가 규정되어 기존에 설치된 소화전까지 인상 작업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없으나, 변경된 기준에 맞게 관계기관(시·군청, 상수도사업소) 통보 등의 노력을 통해 유지·관리하여 현장 활동 대원의 원활한 소방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결과 소방용수시설 점검·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소방용수시설의 고장, 기능 불량, 사용 시 장애 발생 여부 등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여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소방용수를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 신속한 화재진압 및 현장 대응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별도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신분상 처분 대상 아님

6. 조치할 사항

가. ○○○○○○○은

- ① [통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용수관리시스템 입력 사항 확인, 고장 발생 보고 후 관계기관 통보 및 조치 결과 관리, 장기 미조

치 시설 추적 관리, 중복 등록 시설 일제 점검 등 소방용수시설 관리체계를 정비하시고, 특히 소화전 위치가 부적정한 대상에 대하여 위치 이전 등을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은

- ① [권고] 종합감사를 통해 일부 소방관서에서 소방용수시설 관리에 소홀한 내역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시고, 특히 소방용수시설 조사 결과의 시스템 입력 기준, 고장 발생 시 관계기관 통보 절차, 장기 미조치 시설 관리 방안, 소방용수 중복 등록 시설 정비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부서경고·통보·권고

제 목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활동 자료조사 업무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 ○○○○○○ · ○○○○○○○○

관 련 자 ① ○○○○○○, ② ○○○○○○, ③ ○○○○○○○○○○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 · ○○○○○○ · ○○○○○○○○)에서는 「소방기본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청훈령」 제 404호(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000개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료조사 계획 수립·실시 및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소방공무원이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제5조의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방법 및 제8조²⁾의 대상 및 횟수 등과 소방용수시설·지

2) 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①-1. 화재예방강화지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특급,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 연 1회 이상

①-2.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년에 1회 이상 ※ 2025. 2. 17. 일부개정 이전 2·3급대상 2년에 1회 실시

리조사 계획을 포함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21년 소방청 지침³⁾ 「소방활동 자료조사 입력부서 지정 의견조회 결과 알림」에 따르면 “소방활동 자료조사 입력부서에 대한 정리 결과” 지침이 시달되었고, 이에 따른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에서 정리된 지침 「2022년도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정비계획 알림」⁴⁾을 통해 [참고]와 같이 “소방활동 자료조사 필수 항목 입력 담당 부서”에 대해 정리·시행하였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료조사를 실시하여야 했고, 「소방활동 자료조사 필수 항목 입력 담당 부서」지침에 따라 각 부서는 해당 항목 입력 및 기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특히 내근 ☆☆·☆☆ 담당자는 최초 완공대상 건축물에 대한 최초 등록을 통해 자료조사를 위한 기본바탕을 제공하여야 했고, 각 ♥♥♥♥♥♥♥에서는 최초 완공대상 건축물 등에 대한 자료조사 시 규정에 따른 기한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했으며, ♣♣♣♣♣에서는 자료조사 미입력 대상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신축 완공대상 건축물 소방활동 자료조사 최초 등록 업무 소홀

○○소방서(○○○○○○○) 신축 완공대상 000개소에 대한 자료조사 실시 여부

② 제1항의 대상 중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료조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 2025. 2. 17. 일부개정 이전 신축 완공대상 건축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

③ 제1항의 대상 중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3)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5762(2021.07.16.)호 『소방활동 자료조사 입력부서 지정 의견조회 결과 알림』

4) 도 방호구조과-1680(2022.01.18.)호 『2022년도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정비계획 알림』

를 확인한 결과 본서 ◇◇·◇◇ 담당자가 실시해야 하는 신축 완공대상 건축물에 대한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 최초 등록을 미실시한 내역이 총 00건(모두 ●● 시설) 확인되는 등 업무에 소홀히 하였다.

나. 신축 완공대상 건축물 최초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업무 소홀

○○소방서(○○○○○○·○○○○○○○○) △△△△△△△ ◇◇·◇◇ 담당자가 실시하는 신축 완공대상 최초 자료조사 부적정 내역이 0000년 0개소, 0000년 0개소, 0000년 0개소, 0000년 0개소 등 총 00개소가 확인되었는데, 그중 ①①①① 0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00개소는 ②②②②에서 지연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자료조사 실시 업무에 소홀히 하였다.

특히 ③③③③③ 관할 00☆☆ ♡♡♡♡♡은 실시기준(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을 000일 넘겨 실시하였고, ④④④④ 담당 ◇◇◇◇◇◇◇는 000일, ⑤⑤⑤ ⑥⑥⑥⑥⑥⑥는 기준일보다 000일 경과하여 실시하는 등 업무에 소홀히 하였다.

특히 신축 완공대상물에 대한 장기간 자료조사 미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기간 업무 담당자가 최초 자료조사를 미실시하였고, 기간이 경과된 이후 후임자가 자료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장기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자료조사 활동이 없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다. 증축 완공대상 건축물 소방활동 최초 자료조사 실시 업무 소홀

○○소방서(○○○○○○·○○○○○○○○) △△·△△ 담당자가 실시하는 증축 완공대상 최초 자료조사 부적정 내역이 0개소 확인되었는데, 이는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 2025. 2. 17. 개정되면서 새롭게 증축 완공대상물에 대한 소방활동 최초 자료조사 규정이 명문화되었지만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자료조사 실시 업무에 소홀히 한 것이 확인되었다.

라. 특정소방대상물 정기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업무 소홀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 0개소와 0급 대상 000개소 및 0급 대상 00개소에 대한 자료조사 실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 0개소, 0급 대상 0개소, 0급 대상 0개소 등 총 00개소에 대하여 자료조사를 부적정하게 실시하였다.

특히 매년 자료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 0개소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에서 담당하는 ㉠㉠㉠㉠(0000년 미실시), ㉠㉠㉠㉠ ㉠(0000년 미실시), ㉠㉠㉠㉠㉠㉠㉠(0000년 미실시) 총 0개소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실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부적정하게 실시됨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인 재난대응 및 예방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별도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가. 신축 완공대상 건축물 소방활동 자료조사 최초 등록 업무 소홀

☆☆☆☆☆ ♡♡・♡♡ 담당자 및 팀장, 부서장은 감사 대상 기간 중 신축 완공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방정보시스템상 최초 등록하고, 관련 완공 승인 문서를 안내하여 각 ♡♡에 최초 자료조사를 실시하도록 전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축 완공대상 ◇◇ 시설 00개소에 대하여 최초 등록을 미실시하는 등 업무에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⁵⁾를 위반하였지만 민간 신축 완공건축물에 대한 누락 사항이 없는 점, ●●

◎ 신축 완공건축물 특성상 완공검사 및 사용승인 통보가 지연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문책보다는 부서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하여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부서 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나. 특정소방대상물 최초 및 정기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업무 소홀

△△△△△△△△△ ◇◇·◇◇ 담당자 및 팀장, 부서장은 감사 대상 기간 중 신축 건축물 완공에 따라 시스템 등록이 완료되고 완공 승인 문서가 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00개소에 대하여 실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지연 실시하였고, 특히 00㉠㉠ ㉠㉠㉠㉠ 및 ㉠㉠㉠㉠㉠, ☆☆☆ ☆☆☆☆☆☆는 장기간 미실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자료조사에 관하여 총 00개소가 부적정한 기준으로 실시하였는데, 특히 매년 실시해야 하는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 0개소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실시한 것이 확인되는 등 ♡♡ 차원에서 자료조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지만 부서 전체적으로 자료조사 실시 업무가 소홀했던 점, 2025년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문책보다는 부서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하여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부서 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활동 자료조사 평가 및 운영·관리 업무 소홀

소방활동 자료조사 담당자 및 팀장, 부서장은 감사 대상 기간 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0조, 「2024년 소방본부 사무전결처리지침 정비결과 알림」⁶⁾을 통해 소방활동 자료조사 수집 및 활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 고유사무로서 소방활동정보카드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소방활동조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평가관리, 작성관리에 책임이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사 미실시 대상에 대하여 추가 평가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에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0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지만 차원에서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운영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했던 점, 「소방활동 자료조사 입력부서에 대한 정리 결과」가 2022년에 안내되었지만 현재까지 업무분장이 체계화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문책보다는 부서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하여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부서경고」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6. 조치할 사항

가. ○○○○○○은

① [부서경고]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활동

6) 도 소방행정과-3309(2024.02.14.)호 『2024년 소방본부 사무전결처리지침 정비결과 알림』 [붙임2] 소방관서등 사무전결처리지침 시행 발체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소방활동 자료조사 업무를 소홀히 한 ☆☆☆☆☆, ♡♡♡♡♡, ☼☼☼☼☼☼☼☼☼에 「부서경고」 처분하니, 규정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기관·부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부서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② **[통보]**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에 대한 최초 등록 및 자료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00건(소방예방정보시스템 미등록 00건, 신축 대상 미실시 00건, 증축 대상 미실시 0건,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 0건)에 대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변경된 규정⁷⁾을 참고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은

- ① **[권고]** 종합감사를 통해 일부 소방관서에서 소방활동 자료조사 업무에 소홀히 한 내역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시고, 특히 2022년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에서 「소방활동 자료조사 입력부서에 대한 정리 결과」가 안내되었지만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별 업무분장이 체계화되지 않은 점, 2025년 변경된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변경 규정 적용 실효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일선 현장에서 자료조사를 누락하거나 기한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7) 2025. 2. 17. 개정

- 매년 실시해야 하는 대상물 재설정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년에 1회 이상 실시
- 신축 완공대상물 및 증축 완공대상물 최초 소방활동 자료조사 기준 설정